

제2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 월 10 일

여수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경 현 구



여수시 조례 제2292호

붙임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간 또는 여수시 전역에 대하여 최고 운행속도를 20km/h 이하로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이동·보관”을 “견인·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를 “견인·보관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종에 30,000원을”로,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를 “징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견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수시 소속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견인하거나,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견인을 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에게 실시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자진 수거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 후 1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조치되지 않은 경우 견인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보행 안전 및 교통 흐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구역으로 간주하여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 할 수 있다.

1. 횡단보도(진입로 포함), 점자블록 위, 엘리베이터 입구
2.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10미터 이내
3. 차도,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4. 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주 출입구와 연결된 보도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란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현행 제1항과 같음)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생략)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현행 제1항과 같음)
제7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생략)	제7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u>시장은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간 또는 여수시 전역에 대하여 최고 운행속도를 20km/h 이하로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u>
제8조(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 ① (생략)	제8조(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u>이동·보관</u>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 ----- ----- <u>견인·보관</u> ----- ----- -----.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u>이동·보관하는 경우에</u>	③ ----- ----- ----- <u>견인·보관하는 경우에는</u>

는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종에 30,000원을 ----- 징수-----.

④ 시장은 효율적인 견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수시 소속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견인하거나,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견인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에게 실시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자진 수거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 후 1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조치되지 않은 경우 견인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보행 안전 및 교통 흐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구역으로 간주하여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 할 수 있다.

1. 횡단보도(진입로 포함), 점자 블록 위, 엘리베이터 입구
2.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10미터 이내
3. 차도,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제9조(사업추진 등) (생략)

<신설>

4. 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주 출입구와 연결된 보도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제9조(사업추진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